가금 수입위생조건 일부개정

개정 2017.4.6.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-30호

신구문 대조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~5. (생 략) 6. "뉴캣슬병"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정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. 7. 〈신 설〉	**제2조(정의)** ---------- ----------. 1.~5. (현행과 같음) 6. "OIE 지정 뉴캣슬병"---------- ----------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----------. 7. "기타 뉴캣슬병"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.
제3조(부화·사육조건)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(이하 "수출가금"이라 한다)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.	**제3조(부화·사육조건)**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가금(이하 "수출가금"이라 한다)은 수출국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것이거나,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되어 수출국에서 최소 21일 이상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.
제4조(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) ① (생 략) ②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가금의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뉴캣슬병(VVND)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.	**제4조(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OIE 지정 뉴캣슬병의 ----------.

현행	개정안
제5조(수출농장 등의 조건) ① 수출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1년간 뉴캣슬병(lentogenic ND), 가금콜레라, 추백리, 닭전염성후두기관염, 닭마이코플라즈마병, 오리바이러스성 장염(오리 및 거위에 한함), 오리바이러스성 간염(오리에 한함), 가금티푸스, 마렉병, Salmonella enteritidis, Salmonella typhimurium, 닭뇌척수염, 앵무병, 가금백혈병, 세망내피증, 닭전염성 F낭병, 닭전염성 빈혈(CAA), 닭전염성기관지염, 계두, 가금결핵, 산란저하증후군(EDS '76) 및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,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.	**제5조(수출농장 등의 조건)** ① 수출 가금의 사육농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, 가금콜레라, 추백리, 닭전염성후두기관염(오리 제외), 닭마이코플라즈마병(오리 제외), 오리바이러스성 장염(오리 및 거위에 한함), 오리바이러스성 간염(오리에 한함), 가금티푸스, 마렉병(오리 제외), Salmonella enteritidis, Salmonella typhimurium, 닭뇌척수염(오리 제외), 닭전염성에프(F)낭병(오리 제외), 닭전염성기관지염(오리 제외)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,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.
제6조(수출가금의 조건) ①·② (생 략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1.·2. (생 략) 3. 닭마이코플라즈마병, 추백리, 가금티푸스에 대하여는 수출국 정부가 사육농장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	**제6조(수출가금의 조건)**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가금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